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 
제 299 회 임시회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 제 안 설 명 서



2023. 9.

강 한 곤 의원

-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-

## 제 안 설 명 서

제안자 : 강한곤 의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### 먼저,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과 범죄 피해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조와 교육·홍보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.

###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.

- 안 제4조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연도별 실행 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해 규정하였고
-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범죄피해자 지원과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- 안 제8조에서는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
- 안 제9조 및 제11조에서는 교육 및 홍보,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.

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

-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2023년 9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.

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,

-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, 관계기관 협조와 홍보 등을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, 원안 가결 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
# 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【강한곤 의원 대표발의】

|          |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|
| 의안<br>번호 | 00923102 |
|----------|----------|

발의연월일: 2023. 9. 1.

발의자: 강한곤, 도하석, 권숙자,  
임미연, 서보영, 김기열,  
이선주

## 1. 제안이유

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과 범죄피해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 협조와 교육·홍보를 통한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4조 신설)
- 나. 범죄피해자 지원, 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5조, 안 제6조 신설)
- 다.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8조 신설)
- 라. 교육 및 홍보, 포상에 관한 사항 신설 (안 제9조, 안 제11조 신설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 1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 2
- 다. 관계법령 : 붙임 3
  - 「범죄피해자 보호법」 제5조, 제7조, 제9조 ~ 제13조
- 라. 비용추계서 : 미첨부 대상

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달서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제3호 중 ““법인””을 ““지원법인””으로 한다.

제3조의 제목 “(구의 책무)”를 “(구청장의 책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“구는”을 “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7조 및 제10조로 하고, 제4조, 제5조 및 제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(실행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(이하 “실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기본계획 등에 따른 연도별 정책과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
2.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,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
3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관련 교육·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
4. 범죄피해자의 주거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
5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기관 및 관련 법인·단체와의 협력·지원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범죄피해자 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(상담·치료비, 장례비, 위로금 등)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

2. 「국가배상법」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

3.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제6조(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) 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경찰서장의 추천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지원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지원대상자별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7조(종전의 제4조)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를 “「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”로 한다.

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법인에

- 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- 제8조, 제9조,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8조(관계기관의 협조) ①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- ③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제9조(교육 및 홍보)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,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·보급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.
- 제11조(포상)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·단체 및 개인 등에게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-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불임2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  | 개 정 안  |
|---|--|
| <p>제2조(정의)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“범죄피해자 지원법인”(이하 “법인”이라 한다)이란 「범죄 피해자 보호법」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3조에 따라 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.</p> <p>② (생 략)</p> <p>제3조(<u>구의 책무</u>) 구는 범죄피해자의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국가의 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</p>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제2조(정의) ① -----<br/>-----.<br/>1. · 2. (현행과 같음)<br/>3. -----<br/>--“<u>지원법인</u>”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.<br/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(<u>구청장의 책무</u>)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(이하 “<u>구청장</u>”이라 한다) -----<br/>-----<br/>-----<br/>---.</p> <p>제4조(실행계획 수립)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에 관한 연도별 실행계획(이하 “<u>실행 계획</u>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에는</p> |
|   |  |

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 
야 한다.

1. 법 제12조 및 법 제13조의 기  
본계획 등에 따른 연도별 정  
책과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

2. 범죄피해자의 실태조사, 지원  
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

3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관련  
교육·훈련 및 홍보에 관한  
사항

4. 범죄피해자의 주거안전 확보  
에 관한 사항

5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기관  
및 관련 법인·단체와의 협력  
· 지원에 관한 사항

6.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  
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필요  
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범죄피해자 지원 등) ① 구  
청장은 범죄피해자가 안정적인  
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  
의 범위 내에서 범죄피해자에게  
지원금(상담·치료비, 장례비,  
위로금 등)의 전부 또는 일부를  
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

<신 설>
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

2. 「국가배상법」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

3.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범죄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#### 제6조(지원대상자 추천 및 선정)

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경찰서장의 추천으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지원법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.

② 지원대상자별 지원규모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(재정지원 등) ① 구는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·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법 제7

제7조(재정지원 등) 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법인에게 예산

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<신 설>

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② ----- 「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-----

제8조(관계기관의 협조) ①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.

③ 구청장은 실행계획을 수립·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9조(교육 및 홍보)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활동과 관

<신 설>

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·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,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·보급 등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제5조 (생 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10조 (현행 제5조와 같음)

제11조(포상)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·단체 및 개인 등에게 「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

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□ 범죄피해자 보호법

제5조(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 보호 ·

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,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 ·

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.

제7조(손실 복구 지원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

의 피해 정도 및 보호 · 지원의 필요성 등에 따라 상담, 의료제

공(치료비 지원을 포함한다), 구조금 지급, 법률구조, 취업 관련

지원, 주거지원, 그 밖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

마련하여야 한다.

제9조(사생활의 평온과 신변의 보호 등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

는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

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 한

진술이나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등 범죄피해자를

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교육 · 훈련)**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 증진과 효율적 보호 ·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범죄 수사에 종사하는 자, 범죄피해자에 관한 상담 · 의료 제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,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 ·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.

**제11조(홍보 및 조사연구)**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, 지원정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12조(기본계획 수립)** ① 법무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범죄피해자 보호 ·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.

-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1. 범죄피해자 보호 ·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
  2. 범죄피해자 보호 ·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, 연구, 교육과 홍보
  3. 범죄피해자 보호 ·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과 감독

4. 범죄피해자 보호·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과 운용
5. 그 밖에 범죄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13조(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) ① 법무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(이하 “시·도지사”라 한다)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“시행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·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 실적을 매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그 시행계획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시행계획을 수립한 장에게 시행계획의 보완·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